休戰協定에 署名하지않은 大韓民國 主導下의 南北韓의 平和關係設定問題

1973. 8.

이 보고서는 국토통일원 73년도 상반기 학술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73년 8월

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위원: 책임자 裹 載 湜

위 원 白 忠 鉉

 $x_{i} \in \mathbb{F}_{q_{i}} \times \mathbb{F}_{q_{i}}$

次

第一章 序論 - 問題의 性格과 所在	1
第二章 韓国休戦의 特殊한 性格	6
一. 休戰의 古典的 및 現代的 意味	6
二. 韓国休戰의 法的 性質	1 1
三. 韓国休戦의 終了 및 協定 消滅의 問題	21
1. 休戦의 終了 問題	21
2. 休戦協定 消滅의 問題	25
第三章 南北韓間의 平和関係 設定問題	27
一. 南北韓의 法的 関係	27
1. 7.4 南北共同声明以前의 関係	27
2 . 7 . 4 共同声明以後 6 . 23 特別声明까지의 関係	37
3 . 6 . 23 特別声明以後의 関係	39
二. 平和関係設定의 意味의 方法	4 5
1. 平和関係設定의 法的意味	46
2. 平和関係設定의 一般的 万法	47
3. 南北間에 妥当하는 平和関係設定 万案	53

	,					

第1章 序論 - 問題의 性格과 所在

韓国의 統一과 平和의 問題는 안으로 国家의 至上課題로서 追求되어 왔으며, 同時에 그것은 国際聯合이 達成해야 할 主要 한 目的的 課題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한 意味에서 韓国의 平和 및 統一의 問題는 国内問題인 同時에 国際問題로서의 両面性을 갖는다.

이와같은 韓国問題의 両面性이라는 特性으로 因하여 南·北韓의 関係는 - 特히 6·25 特別宣言後 南北韓이 同時에 U·N에 加入하는 경우 - 対内的 및 対外的 関係의 二重性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南北韓의 特殊한 関係에는 国内法과 国際法의規則이 二元的으로 妥当할 수 있으며, 거기에는 両法体制가 調和되지 않는 矛盾的 現象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不調和的 現状은 이른바 分断国의 過渡的 性格에서 연유하는 暫定的 性質의 것임을 本質로 하는 것이다. 最近 한 外国記者가 韓国을 보고 돌아 가는 마당에서 「지금 韓国에는 戦争도 없고 平和도 없다」고 한 말은, 法的인 意味에 있어서 반드시 正確한 것은 아니나, 오랜 동안의 休戦状態 아래에 있는 如斯한 南北韓의 不安한 関係의 現象形態를 適切히 表現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休戦은 戦争状態의 終結, 즉 平和関係의 設定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다. 実在的 見地에 立脚한 現代的 法理論 / 에 따라 休戦이 戦争의 事実上의 終結을 意味하는 것이라 하 드라도 그것은 언제나 平和에 대한 潜在的 危険을 内包하는 것을 本質로 하는 것이다.

韓国에 있어서의 現存하는 緊張과 不安은 그것을 象徵하는 「休戦状態」에서만 緣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世代의 特徵이 全世界를 통해서 戰争과 平和의 그 어느 것이라고 規定지울 수 없는 薄明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点에도 原因이 있는 것이다.

1953年 7月 27日 韓国休戦協定이 大韓民国의 署名없이 成立한지도 어언간 20年의 歲月이 흘러갔다. 그동안 休戦協定第4条 60項에 따라 韓国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高位政治会議의 豫備会談이 協定当事者(유엔軍司令官과 北韓 및 中共志願單司令官)사이에 이루어 지기는 했으나,会議의 構成,時日 및 節次등에 관한 合意를 못한채 無期休会로 되고 말았다. 그後 美·英·仏·蘇 4個国外相会議에서의 合意에 따라 1954年4月 27日부터 6月 15日까지 韓国問題에 관한 「제네바」政治会議가 開催되고 韓国의 平和的 統一方案과 外国軍隊의 撤収問題등이 討議되었으나 参戦16個国(및 大韓民国)의 見解(案)와共産側(北韓・蘇・中共)의 主張이 妥協의 餘地없이 対立을 거듭함에 이르러 마침내 参戦 16個国은 討議의 中止를 宣言하고 問題를 다시 国際聯合에 移管하기로 決定하므로써 政治会談은 結局 流産되고 말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共産側에 의한 休戦協定違反의 事例는 協定全体를 無効化할 段階에 까지 이르고 있다. 특히 軍裝備와 兵力의 不法的 增強은 이를 禁止한 協定의 規定을 事実上 廃棄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U·N軍司令部는 1957年 6月에 U·N軍의 裝備를 現代化하고 協定締結 当時의軍事的 均衡을 回復하고자 決意한다는 覚書를 共産軍側에 伝達한바 있다.

이러한 現状은 裝備增強의 禁止를 規定한 協定条項의 廃棄를 意味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公正한 観察과 報告를 任務로 하는 中立国監視委員会의 폴랜드 및 체코 代表들의 間諜行為등으로 因하여 同 委員会의 機能은 完全히 喪失되고 말았다.

이와같은 韓国休戰의 本質的 不安은 最近에 이르러 이른바 Nixon Doctrin의 展開를 背景으로 하여 急変하고 있는 国際関係의 動態속에서 보다 깊은 不安의 要素를 加味하게 되었다. 그것은 休戰線의 不吉한 오랜 沈黙이 그것을 半永久的인 事実上의 政治境界線으로 変質,固定化한 可能性이 있다.

한편 우리와 歷史的, 現実的인 事情을 달리하면서도 分断国의 特性을 같이 하는 独逸聯邦共和国(西独)은 이른바 平和共存의 国際的 潮流에 順応하여 外交政策의 基本을 이루고 있던 Hallstein原則을 마침내 止揚하고 対等한 次元에서 東独을 対하는 새로운 東欧政策을 展開하기에 이르렀다.

如斯한 周辺的状况의 激変속에서 休戰協定에 署名하지 않은

大韓民国政府의 主導下에 1972年 7月 4日 歷史的인「南北共同声明」이 발표되었다. 이 共同声明은 새로운 次元에서의 南北関係의 展開를 意味하는 것으로서 南北韓사이에 祖国의 平和的,自主的 統一을 위한 基本原則을 設定하고 이를 위하여 먼저 南北韓은 서로 誹謗과 武力的挑発을 中止하고,南北関係를 平和的으로 調節해 나가기 위하여 常設的인 調節委員会를 통해서 政治会談을 열기로 合意한 것이다.

이 共同声明의 內容은,第3章에서 詳論하는 바와같이 默示的으로 南北間에 現存하는 休戰状態 즉 「事実上의 戰爭状態」의 終結에 合意한 것으로 推定되는 法的 意味(効果)를 갖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韓国休戦協定의 当事者사이에는 形式上 여전히 協定의 効力이 持続되고 있는 가운데 南·北韓사이에는 休戦状態의 終結이 黙示的으로 合意되었다는 것은 바로 위에서 말한 韓国問題의 二重性이라는 特性에서 오는 하나의 不調和的 現象임을 意味하는 것이다.

南北共同声明에 이어 지난 6月 23日 大韓民国政府는 「平和統一外交政策에 관한 大統領特別声明」을 公表하였다. 이 特別宣言은 7·4共同声明을 再確認하고 祖国의 平和的統一이 成就될때까지 過渡的期間의 잠정적 措置로서 韓半島에 平和를 安霜시킬 수 있는 現実的이며 実効的인 方法을 提示하였으니 그것은 対外的으로 南·北韓이 동시에 国際聯合会員国으로 加入하여

憲障体制아리서 競争과 協力을 통하여 民族的 力量을 기루며 나아가서는 祖国의 平和的 統一에의 길을 追求하자는 것이다。 特別宣言은 同時에 전통적인 韓国的 한슈타인 原則(対共不容 主義)을 止揚하고 이른바 平和共存의 原則을 受容하였다。

이와같은 劃期的인 政策転換에 의하여 大韓民国政府는 対内的 関係에 있어서 처음으로 北韓을 「地方的 事実上의 政権」으로 서 黙示的으로 認定하였다. 그리고 이와같은 南北関係에 있어 야 할 平和의 定着方案을 구체적으로 提示했다. 이와같이 본 다면,形式的 意味의 戰争狀態 終結은 이미 이루어졌고 따라서 問題은 南北間의 平和를 実効的으로 維持,保障할 수 있는 万 法如何이다.

이상과 같은 問題意識으로써 다음에 韓国休戰의 特殊한 性格과 南北韓間의 法的関係 및 거기에 妥当할 수 있는 平和関係 設定의 方法을 考察하기로 한다.

第二章 韓國休戦의 特性

一. 休戰의 古典的 및 現代的 意味

- が戦이란 本来 国際法上의 概念으로서 交戦当事者間의 合意 에 依하여 敵対行為(戦闘)를 停止하는 行為 및 ユス에 依む 敵対行為의 停止状態를 意味하는 것이다。 1907年의 「陸戦法 規慣例에 関む 規則」 第36条에도 「休戦은 交戦当事者의 合 意로써 作戦行動은 停止한다」라고 規定되고 있다。
- 이와같이 休戦은 敵対行為의 停止를 意味하는 固定的 性質의 기 것으로서 〈戦争의 終了〉를 意味하지 않는 것이 原則이다.

休戦에는 全般的 休戦,部分的 休戦 ユ리고 停戦의 세가지 形態가 있어 各 形態에 따라 그것이 갖는 意味와 効果에 있 어서 差異가 있다。

全般的体験 (general armistice) 은 全軍隊의 戦闘地域 全般에 결친 戦闘行為의 停止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戦争 全体에 影響을 주는 政治的 重要性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例 컨데, 1918年의 聯合国과 独国間의 休戦, 1953年의 韓国事変의 休戦이 그것이다. 이와같은 全般的 休戦은 흔히 「戦争의事実上의 終了」(de facto termination of war)와 같은 政治的 効果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政治的 重要性으로 因하여一般的 休戦을 為한 協定의 締結은 原則으로 交戦当事国政府 또는 軍의 総司令官에 依해서 行하여진다. 協定의 性質(政治

的 重要性)에 비추어 그것의 効力発生에는 批准을 要한다고 解釈되고 있으나, 最近의 慣行은 批准없이 発効케 하는 傾向으로 나가고 있다.

部分的休戦 (partial armistice) 은 위에서 본 全般的 休戦과 같이 全軍隊의 戦闘地域 全般에 걸친 戦闘行為의 停止를意味하는 것은 아니나, 戦争에 미치는 政治的 重要性과 政治的 効果를 갖는 것이 보통이며,이 点에 있어서 一時的・局地的인 戦闘行為의 停止를 意味하는 停戦 (suspension of arms)과 区別된다. 停戦은 보통 傷病者의 収容,死者의 埋葬,防備地帯로부터의 撤収,降服,休戦 또는 上官으로부터 이러한 事項에 関한 訓令을 받기 為한 目的으로 短期間 部分的으로 戦闘行為를停止하는 것이며,따라서 停戦에는 政治的인 目的이 없고 一時的인 局地的 意味를 갖는 데 不過하다. 交戦国 軍隊의 指揮官은 停戦에 関한 協定締結의 権限을 갖는다.

休戦의 一般的 性質에 関하여 무엇보다도 問題가 되는 것은 休戦中의 時期가 어떠한 法的地位에 있는가 하는 問題이다. 即, 그것은 戦時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特殊한 状態인가 하는 것이다. 古典的理論의 代表인 오펜하임(Oppenheim)에 依하면 一般的 休戦期間中 交戰当事者 사이 및 交戰者와 中立国 사이에는 단지 敵対行為의 停止 以外의 모든 点에 있어서 여전히 戰争의 諸条件이 継続한다. 休戦이 一時的 平和를 意味하는 것으로 解釈하는 学説이 있으나, 休戦은 窗定的인 戰闘行為의 停

止를 意味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休戰 後에도 戦闘行為를 再 開할 수 있으므로 休戦을 一時的 平和로 보는 것은 妥当치 않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国際法上 및 国内公法上의 諸関係가 休戦期間中 戦時로 規定되며,그 期間이 아무리 長期에 이물지 라도 그 동안의 法的 関係는 戦時法의 適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休戰은 事実上 및 法律上의 어느 意味에 있어서도 戰爭状態를 終結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法制度의 原則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古典的 理論은 実 際로 各国의 慣行 및 法院의 態度와도 一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의 例를 들면 1944 年 11月3日 프랑스의 Cassation 法院은 Compiegne의 休戦 (1940年 6月22日)이 成立 된 後 独逸側과 連絡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의 한 新 聞記者 Suarez를 裁判함에 있어서,休職이란 敵対行為의 一時 的 停止를 이룰 뿐이며 그 自体 戦争状態를 終結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判示하고 被告를 死刑에 処한 바 있다. 이 判決은 위에서 본 休戦의 性質에 関한 国際法의 古典的 理論 및 実 定法上의 原則과 一致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古典的 理論에 対하여 最近에 스톤(Stone).敎授는 一般休戰協定에 輿한 現代的 傾向을 分析하고, 休戰은 그것이 全般的 休戰인 한 그것은 単純한 戰鬪行為의 一時的 停止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一種의 「戰爭의 事実上의 終結」을 結果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한 実例로서 스톤은 베르사이유講和条

約이 締結되기 前 1919年 11月11日의 聯合国과 独逸 사이 의 休戦이 戦争의 [事実上의 終結]에 該当한 것이며 여러 法 院의 判例에도 이러한 見解가 実地로 採用되었음을 들고 있다. 同時에 그는 스에즈 運河의 封鎖에 舆한 이스라엘-에짚트 間 의 紛争에 対하여 1951年 国際聯合이 取한 態度가 両国間의 一般休戦協定이 戦争状態 終結시키고 事実上의 一般的 平和状 態를 回復한 것이라고 하는 見解에 立脚한 것임을 指摘하였다. 이러한 見地에서 스톤教授는 韓国休戦協定도 그 協定의 前文에 는 이 条件 및 規定들의 의도는 〈純軍事的〉(purely military) 性質에 属하는 것임을 明示하였으나 그것이 全般的인 一般的 休戦이기 때문에 「戦争」(協定에는 「動乱」 生는「武 力敵対行為」라는 用語 쓰고 있다)의 「事実上의 終結」에 該当하는 것이라고 論하고, 陸戦의 法規慣例에 関한 1907年의 혜그 規則 第36~41条에 이르는 休戦에 関한 規定은 이와같 은 새로운 傾向에 비추어 適応과 調節을 娶한다고 게 창하고 있다.

위에서 본 이스라엘과 에짚트間의 休戰協定의 執行에 관해서보건대,에짚트는 이스라엘에 対해서만 經統하여 스에즈運河의對鎖를 実施하였으며·한편 이스라엘은 이 紛争을 国際聯合 安全保障理事会에 提訴하면서 同休戰協定이 交戰当事国 사이의 戰争狀態를 事実上 終結시킨 것이라고 主張하였던 것이다. 이에 対해서,에짚트는 戰爭関係의 終続을 主張하면서 對鎖의 合法性

을 들어 反駁하였다. 이 事件을 다룬 安保理事会는 1951年 9月1日 에짚트에 対하여 同 封鎖의 撤回를 要請하는 결의를 採択하였다. 그런데, 同 理事会의 결의가 과연 一般的 休戰은 戰争의 事実上의 終了를 意味하는 것이라는 解釈에 立脚한 것인지 疑問스럽다. 위의 결의는 伝統法의 変更을 企図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平和에 対한 潜在的 危險状態에 早速히 終止符을 찍고자 한 政治的 行動으로 보는것이 한층 妥当한 見解라고 할 것이다. 또한 実際로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에짚트 休戰協定은 事実上의 意味에 있어서도 戰爭状態의 終結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음을 実証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休戦은 戦争의 終結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前述한 스톤의 実際的 考察에 따라 一般的 休戰으로서 長期間에 걸치는 境遇 그것이 흔히 戦争의 「事実上」의 終了를 結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法的으로는 休戰 自体가 「戰爭」을 終結시키는 것은 아니다. 休戰期間中 交戰 当事国 사이에는 여전히 戰爭状態가 經統하며, 따라서 交戰国과 第3国 사이에는 中立関係(또는 非交戰状態)가 存続하게 된다. 即,休戰期間은 戰時로 規定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休戰 中에도 特別한 合意가 없는限 海上捕獲은 禁止되지 않는다.

그러나 最近의 戰争이 大体로 世界的 規模의 이데올로기적 性格을 反映하여 複雜한 様相을 머우고 있음에 비추어 戰鬪行 為의 停止(休戰)와 講和 사이에는 時間的 巨離가 점점 길어 지는 一般的 傾向을 볼 수 있으며,이러한 距離는 - 韓国의 休戰에서 보는 바와 같이 - 더욱 덜어지고,休戰이 平和로 連 ^{*} 結될 可能性은 稀薄해지는 것이 特徵이다. 그러한 까닭에 [休 戰期間]의 法的地位에 関한 伝統的인 制度에 対하여 再考할 必要가 있다는 說이 最近에 이르러 유력해지고 있다. 即,休戰이 短期로 끝나는 境遇에는 그 期間을 戰時로 보는 것이 습理的이나,그것이 長期化하는 境遇에는 国民의 生活과 国家의活動에 莫大한 苦痛과 부담이 加重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現行法制度에서 오는 重大한 不合理을 避하기 為하여 戦争과 平和와의 사이에 中間的인 새로운 法制度을 設定할 必要가 있다는 見解에는 充分한 根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個人이나 国家가 戦争状態에 얽매어 몇 年이고 不自由한 生活을 忍耐해야 한다는 것은 現実에 맞지 않는 일이라 할 것이다.

二. 韓国休戦의 法的性質

1953年 7月27日 国際聯合軍 総司令官과 共産軍(北韓 및中共) 総司令官 사이의 合意(協定)에 依해서 成立된 韓国休 戦은 어떠한 法的性質을 가진 것인가. 休戦協定이 廃棄 또는終了되지 않는 限 그 効刀이 持続하는 동안은 平時인가 戦時인가. 또는 어떤 第3의 状態인가. 이러한 問題들은 理論上으로나 実際上으로 大端히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먼저 이른바 6·25 韓国事変(또는 動乱)을「執争」으로 보는 境遇 두가지의 結論이 나온다. 하나는 앞서 본 스톤의 学説에 따르는 「平時」이고 또 하나는 伝統法의 解釈에 따르는 「戦時」이다. 그러나 韓国事変을 国家間의 全面的 闘争을 意味하는 「戦争」이 아니고 国際機関에 依한 「警察行動」 또는 平和実施를 為한 「制裁措置」라고 본다면 問題에 対한 結論은 簡単하게 나오지 않는다. 여기에 韓国事変 및 休戦의 特性이 있고 問題가 있다. 이 問題를 理解하기 為해서는 우선 韓国事変의 性質을 検討해 볼 必要가 있다.

問題에 対한 国際聯合의 態度와 学者들의 見解는 一般的으로 韓国事変을 国際法上의 「戦争」이 아니라는 観念에 立脚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実際에 있어서 国際聯合機構 및 韓国에 軍隊을 派遣한 諸国은 北韓과 中共에 対해서 「宜戰」을 하지 않았으며, 同時에 国際聯合은 憲章 第7章에 依한 強制措置을 戰争으로 보지도 않는 것이다. 라우트라트(Lauterpacht前 国際司法裁判所 判事)에 依하면 憲章의 共同的 実施를 為한 軍事行動이 事実上 戰争의 特徵과 外観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을 戰争으로 보는 것은 正確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망스러운 것도 아니라고 한다. 人道的인 理由와 侵略者을 決定할 国際极関의 不備 또는 欠陥으로 因해서 軍事行動의 合法性 如何에 差別을 두지 않고 一律的으로 雙方이 다 같이 交戰法規의 適用을 받고는 있으나 이 事実이 바로 「戰爭」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例을 들면, 国際聯合軍側과 共產側은 다 같이 捕虜의 待遇에 関한 제비바条約을 遵守하기로 宣言하였으 며, 또 実際로 이 条約에 따랐으나, 이와 같은 人道法規의 適 用 自体만으로 韓国事変의 法的 性格을 「戦争」이라고 規定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国際聯合과 權威있는 専門家들은 分明히 유엔 安保理事会의 결의에 依한 国際聯合軍의 出動을制 裁行為 또는 警察行為로 보는 것이다.

한편, 国際聯合에 있어서도 戰争의 概念을 完全히 排除하지는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即, 1950年 6月25日字 安全保障 理事会의 결의를 보면 이 社会가 撤退를 要求한 相対方은 Authorities of North Kores (北韓当局)이었고 北韓의 「政府」는 아니었다. 이 段階에 있어서는 事変을 戰争으로 보지 않았음 이 明白하다. 왜냐하면 위의 결의를 通해서 国際聯合은 北韓 을 国家(또는 그 類似団体)로 보거나 또는 그 政治集団을 政 府로 보지 않았다고 解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同年 6月27 日 理事会의 결의에는 「国際平和와 安全」을 回復하기 為하여 緊急한 軍事措置가 必要함을 認定한다고 記録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문귀의 使用은 国家間의 戰争概念에 立脚한 것이라고 解 釈된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韓国事変에 対한 国際聯合의 態度는 반드시 始終一貫해서 確固不動한 것은 아니었다. 결의의 文面上의 解釈은 어떻든 간에 安全保障理事会는 6月26日의 결의에서 国際聯合에

容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같은 聯邦大法院의 判決理由에서 볼 때 前記 会社의 接受는 韓国事変이 「戰争」은 아니며「戰争이 急迫한 境遇」도 아니기 때문에 不法한 것이라고 判示한 것이다.

또 1952 年 7月17日의 美国 펜실바니아州 高等法院의 判決 에서도 이와 같은 判旨를 볼 수 있다. 同 判決에 依하면 ' 「우리는 이에 国際聯合 憲章 第39条의 權威에 따르고 또 그 権威下에 있다고 認定되는 바, 大韓民国에 対한 武力侵略을 擊 退하기 為하여 韓国에 軍隊를 派遣す 수 있는 大統領의 憲法 上의 権限은 論하지 않기로 한다. 우리의 関心은 이로써 美 国이 司法府의 自発的認定 (judicial notice) 을 要하는 宣戦 없는 戰爭을 行하였는지 그 여부에 있다 | 고 말하고, 「韓国에 있어서의 軍事行動은 宣戰된 戰争 또는 宣戰없는 戰爭의 그어 느 것도 아니다 | 라고 判示하였다. 그 理由로서, 「韓国에 対 한 공격과 이에 対処하기 為한 行動은 美国에 対한 直接的 공격이었던 日本国의 真珠湾攻墜과는 다르다 |고 論하였다. 이 리하여 問題의 事件에 있어서 한 被保険者는 軍事訓練을 받기 為하여 目的地로 가던 도중 列車事故로 死亡하였는데 保険契約 에 規定된 「戦時」中의 軍服務가 아니라는 理由에서 二重補償 金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 美国의 저명한 判事들은 韓国事変의 戦争的 性格을 完全히 否認하지도 않았다는 事実에 유의할 必 要가 있을 것이다. 即,위에서 본 鋼鉄会社事件에 있어서 빈 손 首席判事가 리이드 判事,민톤 判事와 함께 그 判决에 对한 反対意見을 提示하였는데,그것은 事変을 明確히 較時라고 規定하지는 않았으나 「非常時」라고 하였다. 빈손 判事는 말하기를,世界가 아직도 第2次大戰의 破壞로부터 回復되지 않았고다른 加一層의 전율할「全体的 衝突」(global conflict)의 威協에 直面하도록 強要되고 있다. 美国議会는 国防과 同盟国에对한 軍事援助費로 130億弗을 計上하였다. 이러한 非常時에는非常의 権力이 要求된다. 린칸 大統領은 南北戦争의 발발과 同時에 宣戰布告없이,그리고 制定法上의 權限없이 모든 軍事的措置을 取했던 것이라고 하면서 트루맨 大統領의 侵略擊退를 為한 韓国에의 派兵措置는 一種의 戰争的 性格을 떠운 것임을 示唆하였던 것이다.

다음에 韓国事変에 対한 英国의 態度量 보면, 英国은 美国과 함께 主要한 参戦国이면서 事変中 中共과 戦争関係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外交関係도 断絶하지 않았다. 더욱이 1951年 2月1日 國際聯合 総会에서 中共을 侵略者로 規定하고 또한 「韓国內의 侵略者에게 如何한 援助도 삼가해야 한다」라는 決議에 따라 同年 5月18日 「中共과 北韓에 戦争武器와 그生産에 必要한 物品을 禁輸」하기로 決定하였음에도 不拘하고 英国 政府는 1957年 5月30日에 中共에 対한 禁輸緩和量 発表하였으며 6月5日에는 同措置의 法的 効力発生을 宣言하였

依하여 承認된 大韓民国에 対한 北韓集団의 공격을 「平和의 破壞」(Breach of Peace)로 規定하고, 또한 6月27日의 결의에서는 그 공격을 「侵略行為」라고 非難하였으나 그것이 国際戰爭 또는 内乱의 어느 것을 構成하는가에 関하여는 아무린 討
謎도 없었던 것이다.

다음에는 韓国事変에 対한 各国,特히 軍隊를 派遣한 主要国 과 大韓民国의 態度를 살펴 보기로 한다.

美国의 態度를 보면 行政府의 司法府가 다 같이 韓国事変을 戦争으로 보지 않은 것 같다. 1950年 12月6日 当時의 트루맨大統領은 「国家非常事態의 存在」를 宣言하고 陸海空 및 民間의 迅速한 防衛를 娶求하였다. 「非常事態」는 過去에도 美国大大統領이 누차 宣言한 바 있었으나 그것은 国内法上 또는 国際法上의 「戦争」宣言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었다. 例를 들면 欧洲大戟이 발발한 1939年에는 国民防衛를 強化할 目的으로 「制限的 非常事態」를 宣布하였으며, 枢軸国에 依한 危害가 뚜렷해진 1940年 5月에는 侵略을 擊退할 目的으로 国民防衛의 動員을 娶請하는 「無制限非常事態」를 宣布한 바 있으나 그 어느 것도 戦争으로 看做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韓国事変에 対한 美国 司法府의 見解는 Youngstown Sheet & Tube Co.v.Sawyer 事件에 対한 聯邦大法院의 判決을 通해서 間接的으로 알 수 있다. 事件의 事実은 1951年 위의 鋼鉄会社의 労動者 사이에 履傭条件에 関한 紛争이 発生하여 원

만한 解決을 보지 못하고 1952年 4月9日 오저 0 時를 기해 서 同盟罷業에 들어갈 態勢가 確実하게 되자 大統領은 商工長 官에게 同会社를 接受,管理하도록 指示하는 行政命令을 発布한 데서 발단하였다. 政府의 主張은 美国 軍隊와 다른 国際聯 合会員国의 軍隊가 韓国戦級에서 侵略軍과 死闘하고 있는 이 즈 음에 鋼鉄生産의 停止는 国防을 危態롭게 하는 것이며, 鋼鉄의 継続的 生産과 利用을 確保하기 為해서는 위의 行政命令이 必 要하다. 이 重大한 「非常事態」에 対処하기 為하여 大統領은 行政首班 및 美国軍総司令官의 資格으로 憲法上의 権限의 総和・ 内에서 行動한 것이다. 大統領은 過去에 行한 바를 行할 수 있는 고유의 権限을 가지고 있으며,이 権限은 「歷史的 先例 와 法院의 判例에 依하여 支持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対하여 会社側은 위의 行政命令이 立法機能에 該当하며,이 機 能은 憲法上 議会에 属하고 大統領에게 属하는 것이 아님으로 그 命令은 無効이라고 主張하였다. 이 事件은 地方法院,高等 法院, 聯邦大法院을 거쳐 結局은 会社側의 勝訴로 落着되었다. 그런데, 事変과의 舆聯에서 特히 注目할 만한 判決理由의 部 分은 聯邦大法院의 프랑크풀터 判事의 費成意見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同判事는 接受의 権限은 언제나 制限된 時期 또는 特 定된 非常爭態下에서만 부여되고 이 時期 以後에는 撤回되는 것 이라 하고, 그 権限行使는 特別한 環境, 例컨대 「戦時」 또는 「戦争이 急迫む 境遇」(when war is imminent) 에 限해서 許

다. 憲章 및 위의 결의에 위배되는 이같은 英国의 態度는 韓国事変의 戦争的 性格을 否認하며 또한 休戦期間을 平時로 본 것이라고 解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反対로 英国의 検察総長은 1950年 9月 Daily Worker 紙의 通信員이 北韓軍에 派遣된 事実에 対하여 北韓이 当時 英国과 戦争関係에 있으므로 그 자를 叛逆罪로 処罰할수 있다는 見解를 表示한 바 있다. 또한 그 다음 해에 펠 펜턴夫人이 北韓으로 갔을 때에도 같은 見解를 取하였던 것이다. 英国法에 依하면 戦時에 「王의 敵」에 対하여 援助를 부여한 者는 이를,叛逆罪를 構成하는 것으로 하여 死刑에 処하기로 되어있다. 이와같이 英国의 検察当局은 韓国事変을 戦争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濠洲의 境遇를 보면,行政府,立法府 및 司法府의 各部 사이에 事変의 性格에 対한 見解의 差異가 있었던 것으로보인다. 한때 濠洲 共産党事件(1950~51)에서 法院은 濠洲가韓国事変에 参敞하고 있으나 国内法上으로는 平和状態에 있다고 判示한 바 있었다. 그러나 結局 法院은 Burns 事件에 있어서 外務当局의 意見에 따라 韓国事変은 「事実上의 戦争」으로 規定하였다.

韓国事変에 対한 大韓民国의 態度는 어떠한 것인가 지금까지 이에 関한 行政府의 公式的 態度는 表明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憲法에 依하면 大統領은 国務会議

의 의결을 거쳐 宣戦을 포고할 수 있으나 政府樹立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戦時」라고 宣言한 事例는 없으며, 다만 戒厳法에 依하여 戒厳을 宣布함으로써 間接的으로 戦時 또는 이에 準하는 「非常事態」를 宣布한 前例가 있다. 戒厳法 第4条엔 依하면 「非常戒厳은 戦争 또는 戦争에 準하는 事変에 있어서 敵의 包囲攻達으로 因하여 社会秩序가 극도로 混乱된 地域에 宣布한다」고 되어 있다.

大法院에서는 1957年 1月11日에 이른바 姜文奉中将事件의 裁判管轄権을 裁定함에 있어서 現在의 休戦期間을 「戦時」라고 規定하고 이 事件의 管轄権이 軍法会議에 있다는 裁定을 내린바 있었다. 即,軍人이라 할지라도 「平時」에 殺人罪 또는強 姦罪를 犯한 境遇에는 이를 軍法会議에서 審理할 수 없고 一般法院에 그 裁判権이 있다고 解釈되는 旧国防警備法(第3条1項 本文)에 依拠하여 同事件의 弁護人側에서는 現在가「戦時」가 아니고 「平時」임으로 이 事件은 一般法院에 裁判権이 있다고 主張함으로써 管轄権의 裁定을 申請할 것이었는데, 위의大法院裁定은 이에 対한 有権的 解釈을 보여준 것이다.

弁護人側의 申請理由号 보면 다음과 같다。 即,「法理論上平時라 함은 事実上 全面的으로 戦闘行為가 終了되어 政府機関에 依하여 治安이 完全히 回復되고 社会秩序가 平時状態로 復旧된 状態를 말하는 것인 바 所謂 6・25 事変 발발후 北韓傀儡集団에 対하여 国際法上 交戦団体로서 明示的 承認은 없었다

학지라도 그 所属戦闘員에 対한 捕虜処遇 等 事実上 交戦団体로 取扱된 北韓傀儡集団과의 사이에 国際戦争과 同一한 規模와 方式으로 武力闘争을 行한 交戦状態가 休戦協定의 締結로 말미암아 完全히 終熄되어 社会秩序가 平常状態로 回復된 現状態는이를 平時라 解釈함이 妥当하다」.

이에 対한 大法院의 裁定理由는 「動乱 以後 我政府가 戦争의 終了를 宜明한 事実이 없음은 勿論。交通関係가 전혀 두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休戰協定은 戰鬪의 一時的 停止에 不過하며 戒厳解除가 있고 国内治安이 一時的 평온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戰時狀態가 終了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以上 보아온 바와 같이 韓国事変에 参戦한 各国의 「韓国事変의 法的性質」에 関한 見解가 구구하고 또한 그 內容에 있어서 모호한 点을 지니고 있다.

韓国에서는 大法院의 見解나 弁護人의 意見이 다 같이 事変의 戦争的 性格을 認定하면서 다만 休戦의 法的地位에 関해서見解의 差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大法院의 見解는 大体로休戦期間을 戦時로 보는 伝統法의 解釈에 立脚한 것이며,弁護人側의 意見은 実在的 見地에 立脚한 現代的 理論과 一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三.休戰의 終了 및 協定消滅의 問題

1.休戰의 終了問題

이미 본바와 같이 休戰은 法的으로 戰爭状態의 終結,即 平時에의 転化를 意味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複雜한 様相 을 지닌 現代的 戰爭 - 特히 事実上의 段争-에 있어서는 敵 対行為(戰鬪)의 終了와 戰爭의 終結(平和回復)間에 그 時間 的 距離가 점점 멀어지는 一般的 傾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앞서 指摘한바와 같다.

그리하여 休戰期間이, 韓國의 境遇의 같이,長期化하는 境遇 (이것은 暫定的 性質임을 本質로 하는 休戰의 変質的 現象이다)에 있어서도 그 期間을 戰時로 보는대는 重大한 不合理가따르지 않을 수 없으며,따라서 休戰에 関한 伝統的 法制度에는 調節과 修正이 加해져야 한다고 主張하는 見解에는 充分한根拠가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実在的 見地에 立脚하여 韓国의 境遇를 「戦争의 事実上의 終結」 状態로 보는 現代的 法理論(前述의 Stone에 依하여 代表되고 있는 学說)의 現実的妥当性을 認定할 수 있다.

休戰의 終了가 갖는 法的 意味(効果)는 다음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休戰이 戰爭状態의 終結(平 和条約,終戰에 関한 黙示的 合意等)과 同時에 当然히 終了하 는 境遇로서 平時로 転化하는 意味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休戦은 戦争終結의 豫備的, 또는 過渡的 措置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 둘째는, 休報協定의 違反으로 인한 協定의 廃業, 또는 休報期間이 設定되어있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休戰当 事者의 一方이 一方的으로 敵对行為를 再開하는것등으로 因하여 休戦이 終了하는 경우로서,이 경우는 前者의 경우와 反対로 戦争의 繼続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協定에 効力期間이 規定되어 있는 경우에 그 期間의 滿了와 동시에 休戦이 終了하는데 이경우는 둘째의 의미를 갖는다. 즉 戦争終結에 관한 明示的 또는 黙示的 合意없이 休戦이 終了한다는 것은 戦争状態의 避続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最近의 惟行은 休戦期間에 관한 約定이 없으며 또한 敵対行 爲의 再開에 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보통이 다. 이같은 協定아래에서는 一方的으로 休戰 当事者의 一方이 언 自身이 선택하는 時期에 敵対行爲를 再開할 수 있다고 해석한 다. 1907年의 陸戰法規도 休戰協定에 期限이 設定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敵対行爲를 자유로이 재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다만 그 意思를 相対方에게 通告해야 한다고 規 定하였다.

최근의 休賴協定가운데 休賴의 期間에 관하여 明示的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韓国休賴協定과 이스라엘ー레바논 休賴協定이다. 前者는 「双方의 政治的水準에서의 平和的해결을 위한 적당한 協定에 의하여 代置될때 까지」, 그

리고 後者는 「当事者사이에 平和的 해결이 이루어 질때까지」 계속해서 効力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休戦의 効力에 관한 韓国休戦協定 第62項의 規定을 보면 다음과 같다.

本休戦協定의 各条項은 双方이 共同으로 接受하는 수정 및 増補 또는 双方의 政治水準에서의 平和的 해결을 위한 適当한 協定의 規定에 의하여 明確히 代替될때 까지 계속 効力을 가진다.

이와같은 내용의 規定에 따르면 双方의 協定当事者(U·N軍総司令官과 北韓軍総司令官 및 中共志顧軍司令官)間에는 아직도 形式上…실질적으로는 「戦争의 事実上의 終結」状態로 볼 수 있으나……同協定의 効力이 제속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双方」의 当事者속에 大韓民国이包含되느냐에 관해서는 定説이 없어 疑問이나 대한민국정부가 同協定에의 著名을 끝내 拒否했다는 事実로 미루어 대한민국이 協定当事者라고보기는 어렵다. 協定締結 当時 韓国軍은 U·N軍総司令官의 作戰指揮아래에서 行動하고 있었기 때문에 同協定에 事実上 따르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여기에 새삼 留意한 것은 同休戰協定에 北韓은 이른바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 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元首 金日成」이 署名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第三章에서 論하는 바와 같이 南北韓사이에는
7・4南北共同声明을 通해서 黙示的으로 韓国에서의 「事実上의 戰争」狀態의 終結에 合意했다고 본다면 여기에는 協定当事者間의 休戰状態의 謎続과 南北間의 戰争終結이라는 法的으로 調和되지 않는 二元的 現象이 存在하게 되는데 이것은 앞서 論한 바와같이 바로 韓国問題의 両面性이라는 特性에 緣由하는 過渡的 現象으로 理解된다.

休職協定도 条約의 一種이므로 条法法의 一般原則에 따라 終了한다고 解釈된다. 그 終了를 가져 오는 原因으로서 重要한 것은 協定의 違反이다. 前記 陸戰法規 第40条에 의하면 「当事者의 一方에 重大한 休報協定의 違反이 있을 경우에는 他方 当事者는 協定廃棄의 権利를 가질뿐만 아니라 緊急의 경우에는 즉각 戦闘를 再開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問題는 어떠한 客観的 基準에 의하여 「重大한 違反」과 「緊急의 경우」를 判定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有権的 判定機関이 없는 限 그것의 判定은 当事者의主観的 裁量에 依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韓国休戰協定은 그것에 대한 北韓側의 総続的인 重大한 違反事例와 그것에 対応한 UN軍側의 協定 一部의 廃棄로 인하여 協定全体가 無効化할 段階에 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 事実이나 어느 一方当事者가 協定全体의 廃棄를 明示的으로 宣言하거나 敵対行為를 再開할 때까지는 協

定의 効力은 形式上 存続한 것으로 보인다. 1953年7月27日 韓国休戦協定이 調印되던 날,参戦 16国은 다음과 같은 共同宣言을 発表하였다.

国際聯合의 諸原則에 挑戦하므로써 武力攻撃을 再開하는 경우 우리는 또 다시 同盟하여 迅速히 对抗할 것이다。 休戦協定의 그와같은 破壞의 結果는 지극히 重大한 까탉에 敵対行為를 韓 国 国境内에 限定하기가 거의 不可能할 것이다.

2. 休啖協定消滅의 問題

休戦協定도 一種의 条約이므로 条約法上의 一般的 原則에따라 消滅한다고 풀이된다. 一般条約法上 条約의 消滅이라함은 넓은 意味의 条約의 効力(拘束力과 実施力)의 消滅, 즉 条約의 終了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특히 <u>条約当</u>事者의 消滅로 인한 条約의 消滅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그것은 韓国休戦協定의 一方当事者인 国際聯合軍司令官이라는 機関이 国際聯合軍의 解体(또는 撤収)가 実現되는 경우 그것과 同時에 消滅할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一般 国际法上 条約当事国의 消滅에 의하여 条約도 당연히 消滅하는 것이 原則이다. 그러나 他 国家에 의한 相続이 行해진 경우에 非政治的 条約에 限하여 消滅하지 않고 相続될수 있는 것이 原則이다. 当事国이 国際法上으로 完全히 消滅하지 않는 単純한 政府의 変更 또는 領土의 変原에 不過한 경우에는 条約의 実施가 可能한 限 그로 인하여 条約의 効力

은 아무런 影響을 받지 않는다. 政府의 非合法的 変更이 있은 후 新政府가 承認을 받지 못하여 外交的 断切의 状態가 継続하는 경우에도 条約은 消滅하지 않고 그 効力이 停止 (Suspension)될 뿐이며 外交関係의 再開와 더불어 부활하는 것이 原則이다.

이와같은 一般条約法上의 原則이 위에서 仮定한 韓国休戦協定의 一方当事者의 消滅의 경우에 準用될 수 있을 것인지는 疑問이다. 現実主義 내지 機能主義의 立場에서 보면 UN軍의解体에 따른 消滅은 同休戰協定이 다른 実体(例 大韓民国)에의하여 相続되지 않는 限 그것의 消滅을 가져 온다고 보는 것이 妥当할 것이다.

한편 形式主義의 立場에서 본다면 国際聯合軍의 解体와 함께 司令官은 消波되나 그것의 創設機関인 国際聯合機構는 存続하는 까탉에 同休戰協定自体는 당연히 消波하지 않고 그 効力이 停止될 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形式主義的 見解解는 前述한 国家에 있어서의 政府의 非合法的 変更의 경우를 準用하는 무리한 理論構成이라고 할 것이다.

第三章 南北間의 平和關係設定問題

南。北間의 平和関係設定方案을 検討하기 위하여는 먼저 南 (大韓民国)과 北(北韓)의 法的関係가 前提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一般的으로 「平和関係」와 그에 対応하는 概念으로서의 「戦争関係」는 国家 対 国家와의 사이에 設定 되는 것이 原則이기 때문이다。 앞서 検討한 바와 같이,韓国動乱의 性格이 戦争이냐 内乱이냐에 관해서는 国際聯合機構의 一聯의 決議나 学説들이 각기 구구할뿐만 아니라 大韓民国이 休敬協定의 当事者로 되어 있지 않다는 点에서 大韓民国과 北韓의 法的地位에 마르는 両者의 関係는 基本的 으로 特殊한 意味를 갖는 것이다。

一。南。北韓의 法的関係

大韓民国과 北韓의 法的関係를 考察함에 있어서 便宜上

- (1) 7·4 南北共同声明 以前과 (2) 7·4 以後 6·23 宣言에
- (3) 1973·6·23 (平和統一外交政策에 관한 大統領特別宣言) 以 後 및 南 · 北韓이 同時에 U·N·에 加入하는 境遇에 있어서 의 両者의 法的関係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 1.7.4 南北共同声明 以前의 関係 韓国의 独立問題 号 다룬 国際聯合 総会는 1947年 11月

14 日의 決議로서 全韓国을 代表한 政府의 樹立을 위하여 総選挙를 実施하도록 하였으며, 그 決議에 따라 施行된 総選挙의結果로서 構成된 制憲国会는 全韓国을 代表한 政府를 組織한 것이었다. 上記 UN決議가 그 施行過程에 있어서 北韓地域을 占領하고 있던 蘇聯軍에 의한 UN監視団의 入北拒否로 인하여부득이 一部地域(38 度以北)에서는 実施될 수 없었으나 이事実이 大韓民国 政府의 正当性(合法性)을 排除하는 것은 아니다.

1948年6月25日 「国際聯合 臨時韓国委員団 | 도 決議를 通胡 서 「1948年 5月10 日에 実施된 総選挙의 結果는 同 委員団이 接近 可能하였으며 全韓国 国民의 約 3分의 2의 人口를 갖 는 地域에 있어서의 有權者들의 自由意思의 正当한 表示 | 라고 하였던 것이다。 또한 같은 해 12月12日 国際聯合総会는 決 議 第195号(Ⅲ) 로써 大韓民国 政府가 韓国内의 唯一计 合法 政府임을 承認하였다。 同時에 同決議는 韓国의 統一이 아직 成就되지 않았다는 事実에 留意하면서 [国際聯合 臨時 韓国季 員団이 監視하고 協議할 수 있었으며 또 韓国国民의 大多数가 居住하고 있는 韓国地域에 効果的인 統治의 管轄権을 가진 合 法政府(大韓民国政府)가 樹立되었으며,또한 그것은 韓国内의 如斯한 唯一의 政府임을 宣言」한 것이다. 즉 大韓民国 政府 의 合法性(正統性)은 普遍的 国際機構인 国際聯合의 決議에 의하여 承認된 것이다. 이 点에 있어서 大韓民国과 独逸聯邦

共和国(西独)은 다 같이 分断国의 特性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法的地位를 달리한 것으로서 그것은 특히 分断 雙方間의 內部関係에 있어서 더욱 明白한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이리한 両者의 差異는 完成国家를 前提로 한 大韓民国의 憲法構造 (특히 維新以前의 旧憲法体制)와 暫定国家(Provisorium)를 전제로 한 西独基本法(Grundgesety)의 構造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1948年9月9日 蘇聯軍 占領下에 있던 38 度線 以北地域에는 이른바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国」이라는 共產党集団의 政権이 樹立되었다。 韓国의 一部地域에 이같은 政治集団의 組織 (成立)으로 因하여 韓国의 国家性은 一般的으로 이른바 「分断国」의 特性을 지닌 것으로 보여져 왔다。 大韓民国과의 関係에 있어서 如斯한 北韓政治集団의 法的地位는 어떠한 것으로 把握되는가 이 問題를 究明하기 위하여 먼저 分断国의 特性을 分析해 볼 必要가 있다。

一般的으로 分断国의 概念은 본래 하나의 正当(合法)政府에 의하여 代表되는 一国의 形態로 存在해야 할 것이 外見上 두 개의 国家形態로 나타나고 있을 때에 認定된다. 이러한 分断 状態는 一般的으로 暫定的인 現象임을 特徵으로 하는 것이다. 즉 分断国의 問題는 一時的으로 対立하는 두개의 政治権力이 競合하다가 単一의 政治組織으로 統一되거나 또는 어느 一方이 分離,独立하므로써 두개의 国家로 固定되어 그 分断状態가 終

結된 것으로 予見되는 경우에 存在한다。 그러므로 現存하는 分断国이란 대체로 다음과 같은 共通된 特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첫째, 同一領域內에 実効的 政治權力을 行使하고 있는 두개의 対立한 政治組織이 確立되어 있다.

둘째,各 政治組織은 第3国과의 外交関係를 維持하는 各己의 国家組織을 가추고 있다.

세째,各 政治組織은 각기 自己 路線의 国家統一을 追求하면 서 主観的으로는 1 国으로 存在한다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

네째, 対立된 両 当事者는 대체로 自由,共產의 両大陣営의 勢力均衡関係에 의하여 일단 安定된 状態를 維持하고 있다.

다섯째, 承認의 法的効果를 別途로 할 때 国際社会의 現象形態로서는 別個의 国家로 보이면서 当事者의 主観으로는 単一의国家性을 維持하고 있다. 이와같은 現象은 특히 各 当事者가다 같이 一国(外国)에 의하여 同時에 承認되었을 경우에 생기는 矛盾이다.

여섯째, 国家를 代表할 수 있는 正統性은 당사자의 主觀이 아니라 国際機構와 個別国家의 承認에 依存할 수 밖에 없는 基本的 制約性을 안고 있다.

일곱째, 対立当事者의 어느 一方이 別個의 国家로 独立한 可能性과 地方에 統合된 可能性을 同時에 갖고 있다.

여덟째。 最近의 現象으로서 지금까지 어느 一方만을 承認하고

있던 第3国이 雙方을 同時에 承認할 可能性이 있으며 또한 나아가서 両 당사자가 別個의 単位로서 国際機構 특히 国際聯 合에 加入할 可能性이 질어지고 있다.

以上과 같은 分断国의 特性은 韓国의 경우에도 妥当한 것으로서 南北韓의 関係는 서로 政権의 正統性을 主張하는 競合関係에 있으면서 다 같이 単一 国家의 存在를 基本的 立場으로 삼고 있는 共通点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南 * 北韓의 関係는 특히 70 年代에 이르기까지의 대한민국 政府의 北韓에 대한 絶対的 不容政策 - 不承認政策에 의하여 現実的으로 具現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政府의 不容政策은 1952年에 이르러 独逸 聯邦共和国(基民党政権)의 外交政策의 基本路線으로 設定되어 이른바 Hallstein原則으로서 展開되게 되었던 것이다。

西独や 1949年 오랜 于余曲折音에 独逸聯邦共和国(Bunde-srepublik Deutschland)으로 誕生하였다。 ユ 후 西方諸国의 承認으로 ユ 国際的 地位가 向上됨에 따라 同 共和国 政府가 対外関係에 있어서 全独을 代表하는 唯一한 自由合法政府임을 宣言하였다。 ユ 후 1952年에 이르러 基民党政府는 公式的으로 W・Hallstein(56年에서 58年까지 西独外務部의 政務次官)의 宣言文에 따른 이른바 Hallstein의 原則을 発表하였는데 그것은 「西独과 外交関係를 設定하고 있는 第3国이다시 東独과 外交関係를 맺는 것은 独逸의 分断을 深化하는

非友好的인 行為로 看做한다」는 内容의 것으로서 単独代表主義 (Alleinvertretungspolitik)를 闡明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西独의 不容政策 즉 「할슈타인」原則은 대한민국의 絶対主義的인 그것에 比하여 柔軟性과 弾力性을 内包한 것으로서 말하자면 独逸的 特性을 지닌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原則이 比交的 厳格히 実施된 時期는 대체로 1954年에서 60年에 이르는 동안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동안에도 西独은 1951年 이래 東独과의 交易関係를 持続하였으며또한 56年 以後에는 国際的 体育競技에 出戰할 全独팀의 構成을 이루는 한편 統一追求의 한 方便으로서 蘇聯과 国交関係를 樹立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 独逸의 分断을 深化하는 要素를 排除 하기위한 努力으로서 「할슈타인」原則이 実行되었으니 그 代表的인例을 「유고슬라비아」,「큐바」,그리고 「아랍」諸国과의 関係에서 볼 수 있었다. 특히 아랍諸国과의 関係에 있어서는 東独総領事館의 「카이로」設置가 아랍諸国에 의한 東独의 承認이나 外交関係의 設定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는 解明이 따랐음에도 不拘하고 끝내 그곳의 西独公館이 撤収되었으며 또 西独의 対 이스라엘援助問題와 関聯하여 아랍諸国도 西独과 断交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와같은 「할슈타인」原則의 独逸的 適用은 1960 年代에 접어들면서 밖으로는 独逸問題를 비롯한 美。蘇間의 冷戰 解消의

気運과 안으로는 61 年의 総選挙의 結果로서 이루어진 聯立內 閣에 의한 進歩的 外交政策의 樹立等 새로운 情勢의 変化에 따라 서서히 変質돼 갔던 것이다.

이러한 事情아래에서 Hallstein原則은 무엇보다도 그 現実的 妥当性에 대한 批判을 받게 되었으니 그것은 특히 1961年6月 西独下院이 「西独의 国家利益이 犠牲되지 않는 限 東独을 承認한 諸国과의 国交関係를 正常化해야 한다」는 決議에서 엿볼 수가 있다.

그리고 「슈뢰더」外務長官이 「오늘날의 独人들은 過去와 같이 欧羅巴가운데서 平和를 누리지 못하고 東西緊張속에서 苦痛을 겪고 있다」 고 말하고 또 63年11月에는「戦後時代를 終結하고 東欧諸国과의 関係改善을 図謀하는 것이 国家 利益에 合致된다」고 한 것이나 1964年 Erhart首相이「国利를 위해 必要하다면 理念的인 原理에 拘碍됨이 없이 東欧諸国과도 外交 関係를 맺을 용의가 있다」고 한 것은 다 같이 現実을 外面하고 原則만을 내세운 結果로서 結局은 西独의 東独에 대한 不容主義가 共產圈의 結束을 強化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批判을 받아 드린 것이라고 불 수 있다. 그리하여 西独은 이 時期에 東独과 外交関係를 맺고 있는 폴랜드,루마니아,항가리 불가리아,유고슬라비아등과 通商関係를 設定함에 이르린 것이다.이와같이 変質된 Hallstein原則은 60年代後半에 이르러 더욱 本質的인 変化를 보게 되었으니 그것은 変化라기 보다는

同 原則의 止揚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즉 66 年 西独政府의 새 外交政策에 의하면 종래 西独外交政策의 基本으로 삼아 왔던 「할슈타인」主義는 完全한 失策이었다고 指摘되었으며 또되이어 大聯政이 내세운 새 東欧政策으로서의 対東独接近이나 対東欧接近은 「할슈타인」政策을 止揚한 새로운 次元의 実利的外交의 追求이었다. 그리하여 69年10°月 마침내 Brand 西独首相은 「東独에 대한 国際法上의 承認을 考慮될 수 없다.

설사 独逸内에 두개의 国家가 在存한다 할지라도 이 두 国家는 서로를 위해 外国일 수는 없다. 그들 사이의 関係는 相互間에 特殊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言明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하여 1972年11月8日에 西独과 東独은 마침내 「両独関係의 基本原則에 國한 条約」에 仮調印,同年 12月21日에는 正式調印을 마쳤으며,同 条約은 予定대로 지난 4月에 드디어 発効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西独政府의 急進的인 外交政策의 転換 - 「할슈타인」原則의 止揚은 물론 周辺的状況의 変化에 適応한 것으로서自然스러운 推湧라고 할 수도 있으나 거기에는 앞서 指摘한 独逸的 特性 즉 非韓国的인 独逸 特有의 要素의 作用이 있었

음을 看過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것은 現実的으로 独逸聯邦 共和国(西独)과 UN과의 無關性,韓国에서와 같은 分断両体間 의 武力衝突로 인한 民族的 悲劇을 体験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歷史的으로 変遷을 거듭해 온 独逸特有의 分割的 国家 形態(国家聯合 Staatenbund - 聯邦 Bundesstaat, 그리고 独 獎의 離合集散過程)와民族的 또는 人種的 構成의 地方的 特性 으로 인한 非単調性등의 複合的 作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如斯한 独逸的 Hallstein原則의 変質,止揚의 現象은 東西間의 解氷潮流속에서 같은 分断国의 特性을 지닌 韓国에 전혀 無関한 수가 없었던 것이다. 1963年에 이르러 自発的인 試図도 아니었고 또 決裂을 予見하면서도 国際올림픽委員会(I・O・C)의 提議로「코잔느」에서 国際競技南北単一팀의構成을 위한 세차례의 南北会談을 가져 보았다. 이 ,会談은비록 国際競技을 위한 体育分野에 限定된 것이기는 하나 南北間에 이루어진 최초의 直接交渉이었다는 데에 歴史的 意味가 있는 것이었다. (同 会談이 結局 「国旗」라는 政治的 및 法的 問題로 결렬되었다는 事実에 窗意할 必要가 있다)

고 후 70年代에 들어서면서 東·西間에 이른바 平和共存의原則이 受容되는 가운데 大韓民国의 一貫된 対北韓 不容政策은勿論 平和的인 変化現象은 아니나 祖国의 平和的 統一의 基盤 造成을 위한 先決條件으로서 「休戰」으로 象徵되고 있는 南北間의 緊張과 不安을 解消하는 새로운 次元의 方策을 構想하게되었으니 그것은 「北傀」에 対하여「以武力桃發을 拋棄」 할 것과 「開發과 建設과 創造의 競争에 나설」 것을 提唱한 70年 8月15日의 朴大統領의 声明에서 表明되었던 것이다.

이 声明은 同時에 「人尊的 見地와 統一基盤造成에 奇與할수 있으며 南·北韓에 가로놓인 人為的 障壁을 段階的으로 提起해 나갈 수 있는 勸期的이고도 보다 現実的인 方案을 提示할 用意가 있다는 것」을 關明하였는데 이 대목은 다음에 現実化된 南·北赤十字社間의 会談과 7.4 南·北 共同声明에 따른 南·北政治会談의 展開可能性을 시사한 것으로서 政治的으로 重大한 意味를 갖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 段階에서는 아직 北韓의 公式 呼稱을 「北槐」로 하였으며 따라서 南·北関係는 本質的으로 前近代的 社会体制 아래에서의 嫡子(大韓民国)와 庶子(北韓)와의 関係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었다. 오랜 동안 담을 쌓고 욕설과 暴力으로 마구 덤비는 庶子同生의 마음가짐을 달래어서 뜻이 맞으면 조용한 가운데서 다시 一家를 이루어 보겠다는 嫡子로서의 寬客的 意志와 進取性이 그 声明에 담겨져 있다고 풀이

된다.

위의 8·15 声明이 示唆한 바 「人道的 見地」에서의南·北赤十字会談이 71年 8月12日에 大韓赤十字社 總裁에 依하여 정식으로 提議되었으며 이틀 후에 北韓(赤十字社)는 그 提議를 受許하므로서 南·北間에 離散家族問題의 解決을 爲한 人道的会談이 展開되게 되었다. 이 会談은 表見上 人道를 爲한 非政治的 性格임을 本質로 하나 実質的으로는 政治的 統制 아래에서만 可能한 準政治的 会談이며,따라서 그것은 다음에 있을 南·北政治会談의 序曲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世界的인 反應을 불리 일으켰다.

2.7.4 南 * 北共同声明 과 南 * 北関係

南·北赤十字社間의 人道的会談이 온 民族의 지대한 関心속에서 난 십 한 過程을 더듬고 있는 가운데 72年 7月4日에는 李厚洛 中央情報部長과 北韓의 金英柱의 이름으로 南·北 共同声明이 發表되었다. 그것은 「上部의 뜻을 반들어」가 署名 되었음이 明示되었고,다음과 같은 7項目의 合意事項을 內容으로 한 것이다.

- (1) 祖国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세가지의 基本 原則・
- (2) 相互間의 비방과 武力的 挑發을 하지 않을 것과 그것을 防止하기 위한 積極的인 措置를 取할 것.
- (3) 南 北間의 諸般 交流 •

- (4) 南·北赤十字会談의 支援。
- (5) 南•北問題의 直接交渉을 위한 直通電話의 架設。
- (6) 合意事項을 推進하여 그 目的達成을 위한 南·北調節委 員会의 設置。
- (7) 合意事項의 誠実む 履行。

이와 같은 內容의 南·北共同声明은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8·15声明에서 이미 暗示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었지만, 現実的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충격을 주리만큼 그것이 갖는 政治的 意味의 重大性이 크게 評價되었던 것이다.

南·北共同声明의 法的 意味 또는 性格은 論外로 하고 그것이 自主的 (非外勢依存的)이고 平和的인 方法으로 祖国統一을 成就 할 것을 目的으로 하고 이 目的을 위한 最初의 그리고 基本的 合意라는데에 보다 近本的인 意義가 있으며, 따라서 同共同声明은 南·北의 分断体가 実質的으로 対等한 位置에서 서로의 関係를 政治的으로 調節해 나갈 수 있는 劃期的인 契機를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南·北韓間에는 分断 27年 休戰後 19年만에 처음으로 公式的인 政治会談이 열리게 되었으니 그 동안 세차례의 調節委員会会議가 서울과 平壤을 번같아 가면서 進行되고 있다。

그러면 이같은 南·北共同声明은 어떠한 法的 意味와 性格을 가진 것이며 또한 그것은 종래의 南·北韓의 法的関係에 어떠 한 영향(効果)을 주는 것인가.

먼저 指摘 항 것은 7.4 亩 北共同声明이 李厚洛 中央情報部 長에 依하여 發表되는 同時에 그것은 北韓에 対한 如何한 法 的地位의 認定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明示的으로 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南 北間의 그러한 合意가 法理上 南 • 北韓의 法的関係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明 白하다。 다만 중래의 「北俄」라는 公式的 呼稱을 「北韓」으 로 改稱한 것은 相対方울 서로 비방하지 않기로 한 合意事項 에 따른 것으로서 政治道義的 意味를 갖는 것으로 解析된다. 그러나 後述하는 바와 같이 南 • 北声明은 그 形式에 막약 上述한 明示的 图保가 없다고 仮定하는 경우, 国際法主体 間의 共同声明, 즉 台意를 形成하는 것으로서 넓은 意味의 條 約의 性格을 갖는 것으로 解析되며, 따라서 北韓의 法的地位를 「限定的 主体 | 로서 「黙示的 | 으로 承認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同 共同声明의 内容은 政治的, 軍事的 事項을 비롯하 包括的 意味를 갖는 것이나, 다음에 論하는 바와 같이 그 속 에는 特히 敵対行爲의 中止와 戰争 意思의 拋棄가 内包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国際法上 黙示的 方法에 의한 戦争終結

3. 6.23 特別声明과 南 北韓의 法的関係

의 한 方式으로 認定될 수 있는 것이다。

1973年 6月23日 大韓民国 政府는 歴史的인 「平和統一 外交政策에 関한 大統領 特別声明」을 內外에 公表하였다. 이 政策宣言은 「対北韓関係事項은 統一이 成就 될 때까지 過渡的期間中의 暫定措置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北韓을 国家로 認定하는 것이 아님을 分明히 한다」는 明示的 留保(但書)와 함께 다음과 같은 7項目의 內容으로 構成되어 있다.

- (1) 祖国의 平和的統一은 우리 民族의 至上課題이다. 우리는 이를 成就하기 위한 모든 努力을 繼續 경주한다.
- (2) 韓半島의 平和는 반드시 維持되어야 하며, 南·北韓은 서로 內政에 干涉하지 않으며 侵略을 하지 않아야 한다.
- (3) 우리는 南·北共同声明의 精神에 입자한 南·北対話의 具体的 成果를 위하여 誠実과 忍耐로서 繼續 努力한다.
- (4), 우리는 緊張緩和의 国際協調에 도움이 된다면 北韓이 우리와 같이 国際機構에 參與하는 것을 反対하지 않는다.
- (5) 国際聯合의 多數会員国의 뜻이라면 統一에 障碍가 되지 않는다는 前提下에 우리는 北韓과 함께 国際聯合에 加入하는 것을 反対하지 않는다. 우리는 国際聯合加入前이라도 大韓民国代表가 參席하는 国際聯合 總会에서의 「韓国問題」討議에 北韓側이 같이 招請되는 것을 反対하지 않는다.
- (6) 大韓民国은 互惠平等의 原則下에 모든 国家에게 門戸를 개방 할 것이며 우리와 理念과 体制를 달리하는 国家들도 우 리에게 門戸를 開放 할 것을 促求한다.
- (7) 大韓民国의 対外政策은 平和善隣에 그 基本을 두고 있으며 友邦들과의 既存의 유대関係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 나

갈 것임을 再闡明 한다.

이 새로운 特別政策宣言은 위에서 본 7.4 南·北共同声明을 再確認 하고 그 바탕 위에서 祖国의 平和的統一을 위한 그때까지(過渡期)의 暫定的인 措置로서 南·北間에 平和的 関係를 安差,維持할 수 있는 具体的인 政策方案을 提示한 것으로서 南·北関係의 割期的인 進展을 도모한 것이며,同時에 그것은 韓国的(名分的) [할슈타인]原則을 止揚하고 平和共存의国際潮流에 能動的으로 適應하면서 우리 民族이 스스로 나아가야 할 方向을 뚜렷이 設定한 것이다.

그러한 意味에서 6·23 特別宣言은 政治的으로 時期適切한 英 断的 조치로서 높히 評價되고 同時에 友邦国들의 積極的인 同 調를 받고 있는 것이다. (北韓은 어려운 치지에 놓여 부드러 운 拒否의 反應을 보였으며 蘇聯과 中共을 비롯한 東欧圈은 沈黙을 지키면서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特別宣言의 內容이 갖는 法的 意味는 무엇이겨 또한 그것이 北韓의 地位에 미치는 영향과 同時에 南·北의 法的関係에 어떠한 영향(効果)을 주는 것인가. 이 點에 関 해서는 法的인 관점에서 疑問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見解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問題를 考察함에 있어서 基本的으로 認識해야 할 것은 韓国의 統一과 그 地域에서의 平和의 回復은 안으로 民族的 念願을 바탕으로 한 国家의 至上課題로서 追求되어 왔을 뿐만 아

니라 그것은 同時에 国際聯合이 成就해야 할 重要한 目的的 課題의 하나로 되어 왔으며, 그러한 意味에서 韓国問題는 안으로 国內問題인 同時에 他面에 있어서 国際問題로서의 両面性(二重性)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統一問題를 비롯한 韓国問題는 国内法과 国際法이 二元的으로 妥当하는 事項이며, 여기에 分断된 韓国問題의 特性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基本的 觀點에서 特別宜言의 法的 意味(効果)를 分析함에 있어서는 問題를 対內的(附北)関係와 対外的(国際的) 関係로 나누어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

먼저, 対內的 関係를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同 宣言이 결코 北韓을 「国家」로서 認定하는 것이 아님을 明示的으로 留保하고 있는 限, 그것은 黙示的方法에 의한 国家 承認의 効果가 發生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国際法制度에 있어서의 黙示的方式에 의한 承認은 本質上 「承認意思에 疑心의 餘地가 없을 경우에 限하여」, 즉 「反対의 意思表示가 없는 限」 客觀的 行態를 通해서 間接으로 承認의 効果가 推定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南・北韓이 同時에 U·N会員国으로 加入하는 경우 (이것이 問題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나)에 있어서도 大韓民国이 北韓을 「国家로서 承認하지 않는다」는 留保를 明示하는 限 南・北韓의 関係는 「国家間의 関係」로 轉化하는 法的効果는 發生하지 않는 것으로 解析되며,이러한 解釈論은 法

理上 一般的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実例로서 一部에서는 1949年 이스라엘共和国의 U·N. 加入에 있어서 아랍諸国이 업保를 행한 것을 들고 있으나, 그것은 「承認」의 留保가 아니고 「外交関係設定」을 留保한 것이였다.

그러나 이러한 留保는 法的으로 無意味한 必要以上의 行為였다. 왜냐하면 一般的으로 新国의 U·N 에의 加入의 受諾(許可)은, 「国家」로서의 承認을 留保하지 않는 限,全 会員国(反对投標国도 包含」에 의한 国家로서의 黙示的 承認의 効果는 認定되나, 그것은 全 会員国에게 新加入国과의 外交関係의 設定을 義務化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国家 承認과 外交関係의 設定은 別個의 行為이다(外交関係의 設定은 同時에 黙示的 承認의 効果를 수반하는 것,즉 典型的인 黙示的인 方法이기 때문에 흔히 両者를 混同하는 수가 있다).

다음에 対外的関係에 있어서는 個別的으로 南 • 北韓을 同時에 承認하는 国家의 數가 增加해 강에 따라, 더우기 南 北이 同時 에 U·N 에 加入하게 되는 경우, 南·北韓은 各己 別個의 主体 로서 存在하게 되며, 따라서 종래의 韓國의 單獨代表権主義는 「 할슈타인 」原則과 함께 止揚되고 一暫定的으로 이른 바 二重代 表制가 設定 될 것이다. 이 方法이 後論하는바와 같이 『平和의 定着』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라고 同宜言은 말하고있다. 以上과 같은 問題의 分析과 檢討를 通해서 6.23 特別宜言이 対 北韓関係에 있어서 갖는 意味 (効果)는 다음과 같은 引用에 의해 서 要約될 수 있다. 『우리는 休戦線 以北地域을 事実上 支配하고 있는 共産政権이 있다는 現実을 認定한다。 이것을 国際社会에서는 소위 [두개의 韓国] 이라고 할지 모르나 우리로서는 民族的統一의 念願 에 비추어 北韓을 「하나의 国家」로 認定하는 것은 아니다』(金總理의 記者会見 答辯). 이와 같은 政府의 公式的 解説을 法的으로 품이해서 정비 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特別宣言은 対外的 関係에 있어서는 北韓이 外交能力을 갖는 別個의 国際法主体로서 U.N 에의 加入을 認定하나,対内的 関係에 있어서는 그것을 「国家」로서 認定하지 않고,大韓民国의 「合法政府」(de jure government)에대한 「地方的 事実上의 政権」(local de facto government)으로서 黙示的으로 -즉,同特別宣言의 公表라는 密観的 行態를통해서- 承認한 것이다. 따라서 同宣言以前에 있어서의 北韓의 地位는 大韓民国(政府)와의 関係에 있어서 反国家団体,즉「叛乱団体」以上의 것이 아니었다. 大韓民国政府가 休戦協定에暑名하지 않았던 理由의 하나도 同協定에의 暑名에 의해서 黙示的으로 当時의 北韓叛乱団体를 交戦団体로서 承認하게 되는것을 기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된다.

国際法制度上 「地方的 事実上의 政権」이란 制限的 国際法主体性을 갖는 「交戦団体」로서의 地位를 말하는 것으로서,暫定的 地位(過渡的 現象)임을 本質로 한다. 지금까지 大韓民国(政府)를 承認한 諸国(最近에 北韓을 同時에 承認한 国家의 경우를 除外하고)은 北韓을 地方的 事集上의 政権으로 一黙示的으로ー 認定部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南·北韓의 法的関係는 현단제에 있어서 東·西独間의 그것과 同一한 것으로 볼 수 없을것 같다. 西独과 東独間에는, 前述한바와 같이, 이미 国家와 国家와의 関係設定에 적용되는 格式의 「条約」을 締結하고 또한 両者가 同時에 U.N

에 加入하기로 合意하였다. 同条約에는 两当事者가 相対方을 国家로서 承認하는 것이 아니라는 明示的인 意思表示(留保)가 없다는 点에서 相互間에 黙示的 承認이 있었던 것으로 推定할수도 있다.

한편, 東西独의 関係는 「特殊한 内部関係」라고 말한 註釈的解明을 法的으로 分析하면 그것은 이른바 one nation. two states의 새로운 形態의 「国家聯合」(Staatenbund. Confederation of States)의 構成에 黙示的으로 合意했다는 뜻으로도 解釈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東・西独의 対內的関係는 両者가 앞으로 U.N에 加入함에 있어서 취할 態度(留保与否)에 따라 더욱 明確히 規定될 수 있을 것이다.

二. 南北韓間의 平和関係設定方案

一節에서 検討한 바와 같이 南·北韓의 法的関係는 対内的 및 対外的 関係의 両面性을 갖는데에 特性이 있다. 이 特性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韓国問題(統一 및 平和)가 안으로 国家의 至上課題로서 追究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同時에 国際聯合이 이룩해야 할 主要한 課題의 하나로 되어왔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韓国問題는 一面에 있어서 国内問題인同時에 他面에 있어서 国際問題로서의 二重性을 갖는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韓国問題는 国内法과 国際法의 規則이 二元的으로 適用(또는 準用)되는 事項이며, 따라서 거기에는 両法体制사이에 서로 調和되지 않는 모순적 現象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이 問題에 関하여는 筆者가 1972年 6月에 国土統一院에 提出한 「韓国統一方案의 法的問題」에서 소상히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같은 基本的 認識아래에서 南北韓間에 平和関係를 設定한다는 것이 法的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이며 또한 南北間에 妥当할 수 있는 平和関係設定의 方式과 方案은 어떠한 것인가를 考察하기로 한다.

1. 平和関係設定의 法的 意味

平和関係設定의 意味를 생각함에 있어서 먼저 留意해야할 것은 韓国事変의 性格의 問題이다. 第二章에서 論한바와 같이 그 問題에 관해서는 学設이 区区한 뿐만 아니라 国際聯合機構의 諸措置도 明確한 規定에 依拠하고 있지 않은것 같다. 그리하여 国際聯合軍 司令官과 北韓人民軍 司令官 및 中共志願軍司令官 사이에 「休散協定」이 締結되었다. 이것은 重要한 의미를 갖는 事実이다. 이 事実에 의하여 韓国事変은 現実的으로 「事実上의 戰争」으로 処理되고 있으며,여기서도 일단 그러한 性格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밝혀 둔다.

平和関係의 設定이란 一般的으로 国家間의 戦争状態를 終結하

는 것을 意味한다. 国家間의 法的関係는 基本的으로 平時와 敞時로 二大分되며 따라서 戰争의 終結은 곧 平和에의 転化를 意味하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의 平和関係設定에 의해서 「事実上의 戰争」 狀態 (例컨데,中日事変)의 終結을 가져온 例가적지 않다. 이것은 一般国際法上의 戰争終結의 方式이 事実上의 戰争関係에도 妥当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러한 平和関係設定의 一般的 方法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고,그 어떠한 것이 南北関係에 妥当할 수 있는 것인지를 다음에 보기로한다.

2. 平和関係設定의 一般的 方法

国際法上 戦争状態는 다음과 같은 方法에 의하여 終結된다.

- (1) 欝和条約(平和協定)의 締結.
- (2) 交戦当事者 雙方이 事実上 敵対行為를 中止하고 戦争意思 (animus belligerendi)를 拋棄한 경우.
 - (3) 一方의 交戦者가 他方을 征服 併合한 경우・
- (4) 一方的 戰爭状態終結宣言(이것은 一般的方式이 아니며 또한 定説도 아니다).
- 위의 (1) 과 (2) 는 合意에 의한 戰爭終結方法인데, 특히 (1) 은 明示的方法이며, (2) 는 黙示的 方法이다. 이에 대하여 (3)은 一方的行為에 의한 方法인데, (4)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

지는 疑問이다.

講和条約(平和協定)의 締結

이것은 戦争終結의 가장 一般的인 方法이다. 講和条約은 戦争状態의 終結을 目的으로 하는 条約으로서 平和条約이라고도하나 그 名称은 반드시 그것에 限定되지 않는다. 1956年의日·蘇共同宣言도 一種의 譯和条約이며 明示的 合意에 의한 戦争状態終結의 한 標本이라고 할 수 있다.

謂和条約은 戦争状態의 終結과 平和의 回復을 規定함과 同時에 平和回復後의 当事国間의 法的関係를 規定하는 것이 原則이다. 平和条約속에 아무런 規定도 하지 않은 事項의 処理에 関해서는 学説의 対立이 있다. 慣行과 多数説은 講和条約締結 当時의 現状을 그대로 認定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現有状態原則(Principle of uti possidetis)이라고 한다.

이러한 性質과 內容을 갖는 平和条約은 国家 対 国家의 戦争,特히 法律上의 「戰争」을 終結하고 平対를 回復하는 方法으로서 가장 典型的인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北韓当局은 統一의 先決条件으로서 南北韓사이에 「平和協定」이 締結되어야 한다고 되풀이해서 主張하고 있는데, 그 主張의 底意(真意)는 平和協定(즉, 平和条約)이라는 国家間의 法律行為의 格式을 取하므로써 北韓의 法的地位를 大韓民国의 그것과 対等하게 格上하고 나아가서는 하나의 国際法主体로서 默示的인 認定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推定할 수 있다.

निहुम् १८५ 이와같은 北韓当局의 主張은 지금까지 그들이 시도하거나 実践하고 있는 競合的外交路線(大韓民国政府를 承認하고 있는 国家로부터 同時에 承認을 받거나 外交関係를 設定하는것)과 表裏的으로 一致하고 있는데,이러한 路線은 政略上 「単一国家」(one Korea)의 存在를 고집하고 있는 그들의 表面上의 主張과는 根本的으로 矛盾되는 것임을 쉽게 看破할 수 있다. 그리고 韓半島에 있어서의 「事実上의 戰争状態」의 形式的 意味의 終結은,다음에 論하는 바와 같이, 7.4 南北共同声明에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解釈된다. 따라서 問題는 実質的인 見地에서 南北間의 平和를 実効的으로 維持,保障할 수있는 方法如何이다.

黙示的 合意에 의한 戦争終結方法

이 万法은 交徵当事者가 戰争状態의 終結에 관한 形式的 節次를 取하지 않고 単純히 敵对行為를 中止하고 戰争意思를 拋棄함으로써 戰争이 終結되는 경우이다. 이와같은 默示的 万法에 의한 戰争状態의 終結은 大体로 19世紀以前의 現象이다. 例컨데, 1716年의 Sweden-Poland 戰争, 1702年의 Spain-France 戰争, 1801年의 Russia-Persia 戰争, 1867年의 Fran-

ce-Mexico 戦争, 그리고 같은 해의 Spain-Chile 戦争等이이 러한 方式에 의하여 終結되었다.

즉,7.4 共同声明의 主要한 内容을 보면,그것은 韓国統一을 成就하기 위한 基本的 原則을 設定하고,그것을 위하여 南北韓은 첫째로 (同声明 第2項),서로 비방과 「武力的 挑発」을 「中止」하고,雙方間의 問題를 平和的으로 調節해 나가기 위하여 政治会談을 열 것에 合意하였다.

위의 第2項의 文面에 따르면 그것은 어떤 意味에서는 明示的으로 武力的 挑発, 즉 敵対行為를 中止하고 戰爭意思를 拋棄한 것. 즉, 南北関係를 平和的 方法으로 調節해 잘것을 共同으로 宣言(合意)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같은 黙示的 方法에 의한 戦争의 終結에 있어서는 戦争이 終結한 時期가 不明瞭하기 때문에 交戰当事者間의 関係가 애매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戦争狀態의 終結을 위한 当事者間의 諸條件이 明示되지 않기 때문에 交戰者間의 權利 義務는 戰争開始前(開戦当時)의 狀態 (Status quo ante bellum)로回復한 것인지, 또는 戰争終結後(終戰当時)의 狀態(Status quo post bellum)를 維持한 것인지에 관하여 問題가 있게된다. 多数說은 後者를 支持한다. 왜냐하면 平和條約을 締結지 않고 戰意를 拋棄하여 敵対行爲(戰闘)를 中止한 当事国은 現況을 黙認하면서 戰争終結의 意思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妥当하기 때문이다.

征服과 併合

征服에 의한 戦争의 終結은 交徴当事国의 一方이 他方의 領土를 完全히 占領하고 그것을 併合하는 경우에 成立한다. 이方法을 南・北間의 関係에 準用한다면 그것은 武力에 의한 鎮圧과 国土收復에 該当하는 것이다. 이것은 勿論 非平和的 方法의 問題이므로 여기서는 論外로 한다.

戦争狀態 終結宜言

交戦当事国의 一方(戦勝国)이 正式의 平和條約을 締結하기 前에 他方当事国에 대하여 戦争狀態終結의 宜言(또는 措置)을 一方的으로 行하는 일이 있다.이러한 宜言은 ユ 節次가 区区하며 또 ユ 法的 効果에 관해서도 定説이 없어,과연 一方的

措置만으로 戰爭狀態가 法的으로 終結할 수 있는 것인지는 疑問이다 (Stone 敎授는 이와 같은 一方的 宜言을 終戰의 한方法으로 認定하고 있다).

第1次 大戰後 어떤 理由로 因하여 平和條約이 締結되지 않은 경우에는 一方的으로 戰争終結의 措置을 取하는 例가 있었다. 美国은 1921年7月2日 먼저 独国과의 戰爭을 終結하는 宣言을 上下兩院의 合同決議로써 行하고 그 後에 関係国과 平和條約을 締結하였으며,中国도 Versailles條約의 山東條項에 反対하여 그 條約에 署名하지 않았던 까닭에 1919年9月 総統令으로 独国과의 戰爭狀態를 終結하고 21年5月에 이르러 独国과 「平和狀態回復」에 관한 協定을 締結하였다.

第2次 大城後 英国은 1947年9月16日에 獎園에 대하여 战争狀態의 終結을 통고하였다。 또 西独을 占領 管理한 美。 仏,英 3国은 51年 7月9日独国에 대한 戰争狀態의 終結措 置을 취했으며,美国만은 議会節次上 同年 10月19日에 그 措置을 完了했다。 그러나 3国의 独逸에 対한 占領管理는 그대로 継続되었으니 그것은 確実히 変態的 終結措置라고 아니한 수 없는 것이다。 (西独은 그 前에 이미 国家樹立을 宣布하였음은 前述과 같다)。 그 後 独逸의 占領管理는 1954年10月23日 파리에서 調印된 「独逸聯邦共和国에서의 占領制 既의 終了에 관한 議定書」에 의하여 終結되었다。蘇聯도 55年1月25日 独逸에 대한 戰争終結의 宣言을 發表하였다。

이와같은 方式은 比較的 最近의 現象으로서 伝統的 慣習으로는 認定되고 있지 않는 方法이다. 위에서 본 諸先例의 大部分은 그 宜言 後에 새로히 平和條約을 締結하였다. 그러한 까닭에 戰争狀態終結의 一方的 宜言은 一種의 豫備的 性格의 것으로서 戰争의 「事実上」의 終了(de facto termination of war)를 意味하는 것으로 解釈된 수 있으며, 그 確定的終了의 効果는 後日의 当事者間의 合意形成에 의하여(또는 他方의 受落에 의하여 發生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南北韓間에 妥当하는 平和関係 設定 方案

以上과 같은 韓国動乱과 休戰의 特殊한 性格, 그리고 南北韓間의 特殊한 法的関係에 관한 考察을 통하여 結論的으로 南北韓사이에 妥当할 수 있는 平和関係의 設定方案을 提示해보려고 한다.

韓国에 있어서의 不安과 緊張을 象徵하고 있는 休敬狀態는 오랜동안의 休敬期間을 통해서 「事実上」終了(Stone 敎授의 이른바 韓国戰争의 「事実上의 終結」狀態)하고 따라서 休敬線은 새로운 意味의 政治境界線으로 轉化하고 있다.

이러한 狀態아래에서 統一을 追求하는 現実的인 段階的 方法으로서 그 不安과 緊張을 解消하기 위하여 大韓民国 政府의 主 導下에 前述한 7.4 南北共同声明이 公表됨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声明은 앞서 分析・檢討한 바와 같이 祖国統一의 基本原則 을 設定하고 그것을 위하여 무엇 보다도 南北韓은 서로 「誹 謗과 武力的 挑發을 中止할 것」(第 項)과 앞으로의 南北 関係를 平和的으로 調節하기 위하여 常設的인 南北調節委員会에 의한 政治会員을 열기로 合意한 것이다.

이와같은 內容의 共同声明은 两当事者間에 敵対行為를 中止하고 敬意를 拋棄하기로 合意한 것이며,따라서 그것은 黙示的으로 韓国에서의 「事実上의 戦争狀態」의 終結에 合意한 것으로 推定되는 것이다. 또한 어떤 意味에 있어서는 위의 文面 그대로 明示的으로 戦争狀態의 終結을 宜言한 것으로도 解釈될수 있다.

그러한 意味에서 共同声明은 包括性을 지니면서도 具体的이며 実質的인 內容으로 構成되어 있는 것으로서, 特히 그 第2項은 위와같은 法的 意味를 含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이러 한 見地에서 同声明은 一般国際法上의 格式을 避하면서 南北韓 의 特殊한 関係에 妥当할 수 있는 가장 適合한 「事実上의 戰争」終結의 方法이라고 볼 수—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形式的 意味의 戰争狀態의 終結,即 平和 関係의 設定은 이미 7.4 南北共同声明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解釈되며,따라서 北韓이 固執하고 있는 이른바 南北間의 「平和協定」締結의 要求는,앞서 指摘한 바와 같이,고 真意에 있어서 南北関係를 「国家対 国家」의 関係로 轉化하여 対等한 国際法主体로서의 地位量 黙示的으로 承認받고져 하는 것이라고 풀이 된다.

그러므로, 南北韓間에 平和協定이 締結되어야 한다고 主張하는 北韓当国의 態度는, 앞서 본바와 같이, 지금까지 北韓이 強力히推進하고 있는 競合外交路線과 表裏的으로 一致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表見上 北海이 政略的으로 標榜하고 있는 韓国의 国家的 単一性과는 明白히 矛盾되는 것이다. 지난 7月21日의 차大統領의 論示(国防大学院 卒業式)가운데 聯邦制나 「平和條約」의 提識도 窮極的으로는 우리의 安保를 破壞하려는 「政略的인 虚構性을 띤 것」이라고 指摘한 것은 바로 그러한意味에서 正当한 見解를 보여준 것이다.

뿐만아니라 7.4 共同声明에 이어 大韓民国政府는 지난 6月 23 日에 「平和統一外交政策에 관한 大統領特別声明」을 內外에 公表하여 統一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過渡期間의 暫定的 措置로서 南北韓間에 実質的으로 있어야할 平和関係를 具体的으로 提示했다. 그것은 7.4 南北共同声明을 再確認하고 그 精神위에서統一이 成就될 때까지의 平和維持的 方法으로서 対外的으로는 南北韓이 다 같이 別個의 国际法主体로서国際機構,特히 国際聯合에 加入하므로써 憲章体制下에서 서로 善意의 競争과 協力을 통하여 民族의 力量을 培養하고 窮極的으로는 祖国의 平和的統一에의 질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 特別宜言은, 一般的으로 指摘되고 있는 바와 같이, 大韓民国政府의 自信과 寬容과 進取性에 立脚한 現実的인 平和統一政策이며 同時에 南北間에 「平和」를 安着시킬 수 있는 実効的

方法이라할 것이다.

이와같이 본다면 問題는 이미 設定된 形式的 意味의 南北間의 平和関係를 実質的으로 維持,保障할 수 있는 方案이다. 即南北韓間의 平和維持를 保障할 수 있는 方法의 問題이다.

그 方法은, 첫째로 6.23 特別宣言에 의한 提議에 따라 南
·北韓이 同時에 國際聯合에 加入하기 U·N·의 目的과 原則아
라에서 統一을 위하여 協力해 나가야할 것이며, 둘째로 国際聯
습은 韓国의 平和를 維持。保障하는 方法으로서 現在의 駐韓
U.N.軍을 「U.N.韓国平和維持軍」(U.N. Peace Observation
Porces)으로 改屬하여 駐屯케 하여, 同時에 国際聯合総会의
「平和団結決議」("Uniting for Peace, Resolution)에서 規
定된 것과 같은 「平和監視委員会」(Peace Observation Commission)를 設置하여 南北間의 平和를 監視。報告하는 梭能을 갖게 하는 것이다. 둘째의 方案은, 最近에 美国国防省이
議会에 提出한 報告書의 내용을 分析하면, 現実的인 可能性을
갖는 것으로 展望된다.